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2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김미애

엄태영 · 김 건 · 조경태

성일종 · 서천호 · 유용원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를 말한다)등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3의 개정규정 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신 설></u> | 제58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 |
| | 촉진을 위한 구매 지원) ① 국 |
| |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 |
| | <u>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u>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 |
| | 른 장애인을 말한다), 차상위계 |
| | <u>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 |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 |
| | 층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및 |
| | 다자녀가구(「공공주택 특별 |
| | 법」 제48조에 따른 다자녀가 |
| | 구를 말한다) 등을 대상으로 |
|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
|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
| | 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 |
| | 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렁 |
| | 으로 정한다. |